

# '스마트메이커' 및 오픈마켓 전자금융거래 약관

## 제1장 서비스 이용

### 제1조 (서비스의 변경 및 내용수정)

-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약관, 운영정책 및 회사가 설정한 사용권 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사용권은 회사가 창조한 산출물로서 회사는 사용권 내용의 제작, 변경, 유지, 보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의 사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유통 질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④ 회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수정(패치)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정(패치)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해당 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 ① 서비스는 사용권 특성 상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정해진 시간이 없이 제공합니다. 회사가 서비스 제공시간을 제한할 경우, 사용권의 초기화면이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시간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동안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사용권 내용이나 서비스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회원들의 비정상적인 사용권 이용행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관련 법령에서 특정 시간 또는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5.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당해 서비스 수익악화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 제1호의 경우,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일정 시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최소한 24시간이전에 그 사실을 회원에게 사용권 초기 화면이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고지합니다.
- ④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권 초기 화면이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1일 12시간이상 연속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속적 이용계약 계정에 한하여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하고, 사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서버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지·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나,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하고, 사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회사는 기술상·운영상 필요에 의해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14일전에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에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가 제7항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 회원은 무료서비스 및 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 않

은 유료서비스, 계속적 유료 이용계약, 기간제 사용권, 영구 사용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제3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사용권의 초기 화면이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상호
2. 제품명
3. 이용등급
4. 등급분류번호
5. 제작연월일
6. 사용권 제작자 또는 배급자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7.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 (정보의 수집 등)

- ① 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회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저장·보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간의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또는 사용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것이며, 본 정보는 회사만이 보유하고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제3자는 절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해당 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정보열람이 필요한 사유 및 열람 범위를 개인에게 사전 고지하기로 합니다. 다만, 계정도용, 현금거래, 언어폭력, 사기 등 기망행위, 버그 악용, 기타 현행 법령 위반행위 및 이 약관 제13조에서 정하는 중대한 약관위반행위의 조사, 처리, 확인 및 이의 구제와 관련하여 회원의 정보를 열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해당 정보가 열람된 개인들에 대하여 열람한 사유와 열람한 정보 중 본인과 관련된 부분을 고지하기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 및 프로그램 안정화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회원의 PC, 스마트폰 등 단말기 사양 및 설정 정보와 전화번호, MAC, IP주소 등을 수집·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이용상품)

- ① 회사는 회원이 별도 비용지급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무료서비스")와 회사가 미리 책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이하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서비스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일시불 결제방식과 구독약정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구독 약정 결제는 2개의 상품이 존재합니다. (라이선스, VIP멤버십 서비스)  
라이선스 구독약정 결제방식은, 회원이 서비스의 약정기간을 사전에 12개월, 36개월(영구버전) 등으로 정하고, 소정의 요금 할인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매월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3개월은 필수로 약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3개월 이내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 회원의 사정으로 구독약정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할인혜택 반환금((소비자가-월 서비스 구입가)\*이용월수)과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VIP멤버십 서비스 구독약정 결제방식은 회원이 서비스의 약정기간을 사전에 24개월로 정하고 라이선스, 종이책, 유료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교육 할인,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VIP멤버십 서비스는 3개월동안 필수로 약정을 유지해야 하며,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받으신 라이선스, 종이책, 유료 온라인 교육에 대한 비용을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하며, 오프라인교육을 할인 혜택을 받아 수강하였거나, 기술지원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장기간 구독약정을 맺은 회원이, 해당 약정기간 만료 7일전까지 서비스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회원의 약정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36개월 약정은 영구버전이므로 제외합니다.(서비스 해지 불가)

- ④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회사가 미리 정한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 ⑤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선택한 유료서비스 이용신청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유료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원은 서비스 이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유료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서비스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무통장입금방식으로 신청한 회원은 신청완료 후 즉시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하며, 3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을 시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3. PG결제방식으로 구독약정을 맺은 회원의 서비스 요금은, 약정시점에 회원이 등록한 대금결제 정보를 근간으로, 회사가 매월 자동 청구합니다.
- ⑥ 회사는 미성년자인 회원이 결제가 필요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유료 서비스 이용은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 전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 제6조 (결제 방법)

- ① 결제서비스의 이용은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캐쉬 충전은 각각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 원, 500,000 원 등의 단위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을 이용, 한 달이상 기한 정함이 있는(기한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월불입 방법의 자동결제 방식으로 월정액 사용권제도를 이용한다면, 매월 고객에게 통지없이 자동 결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원이 특정된 결제수단을 사용함에 따라서 사용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7조 (결제 수단)

-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아래의 결제수단 중 회원이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결제수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② 회사의 정책이나 사정에 의해 결제수단이 추가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유료결제를 하면 각 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하는 결제 약관 혹은 서비스규정 동의한 것이며, 결제 이용금액 한도에 관해서는 각 업체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1. 신용카드
    -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이용요금은 카드 대금 청구서에 합산 청구됩니다.
    -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이용 시 안심클릭, ISP 등 결제방식이 다름에 따라 적법한 규정에 따른 ISP비밀번호, 안심클릭 비밀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카드사와 연결되어 카드 정보의 유효성이 확인되면 결제가 완료 됩니다.
  2. 계좌이체
    - 사용권 구매 요금은 결제 시 해당 계좌에서 즉시 인출이 됩니다.
    - 계좌이체를 할 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를 이용 시 예금주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은행과 연결되어 계좌 정보의 유효성이 확인되면 결제가 완료 됩니다.
    - 은행으로부터 미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범용 공인인증서 포함)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핸드폰
    - 사용권 이용요금은 핸드폰 요금 청구서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 핸드폰을 통한 결제는 핸드폰 가입자와 핸드폰 번호가 확인된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법인명의, 선불요금제의 휴대용 단말기나 핸드폰이 미성년자로

가입된 휴대폰 등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이용 시 SMS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결제 페이지에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 됩니다.

4. 상품권

- 상품권은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도서생활권 등을 말합니다.
- 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권 결제 서비스의 처리절차를 이용하여 상품권 번호의 유효성이 확인되면 결제가 완료가 됩니다.

5. 기타 결제수단

- 그 외의 제공되는 결제 서비스는 제공사의 결제 정책에 따라 결제 방법이 결정이 되며 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조 (포인트)**

- ① 회사는 회원의 콘텐츠 이용실적, 콘텐츠 등록실적, 회원가입 권유실적 등에 따라 (사이버)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부여시점으로부터 1년입니다. 만일 회원이 이 기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 ② 포인트 적립에 오류가 있을 경우, 회원은 30일 이내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절차를 거친 후 결과에 대하여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포인트에 정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경영상, 기술상의 이유로 사전고지 후 포인트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전고지를 최소한 14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한 서비스 종료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적립된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제9조 (콘텐츠 등 저작권 귀속)**

- ① 서비스 내에서, 회사가 제작한 '솔루션' 및 콘텐츠, 웹사이트와 서비스포털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소유입니다.
-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자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회원은, 사용권 내에서 보여지거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 또는 다른 사용자가 사용권 또는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 또는 전송하는 대화 텍스트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사운드 및 모든 자료 및 정보(이하 '사용자콘텐츠')에 대하여, 회사가 다음과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해당 사용자콘텐츠를 이용, 편집 형식의 변경 및 기타 변형하는 것(공표, 복제, 공연, 전송, 배포, 방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 가능하며, 이용기간과 지역에는 제한이 없음)
  2. 콘텐츠를 제작한 제공자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면 거래를 위한 사전 동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며, 사용자의 콘텐츠가 유상으로 판매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익을 배분 받는다는 조건.
- ④ 사용권내에서 보이지 않고 서비스와 일체화되지 않은 회원의 사용자콘텐츠(예컨대, 일반게시판 등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러한 사용자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 13조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회원은 회사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⑦ 제3항은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할 동안 유효하며 회원탈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 제2장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및 솔루션 사용

### 제10조 (플랫폼 및 솔루션 제품)

- ① 회사는, 프로그램 기술이 없는 일반인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디지털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코딩이 없는 최신 기술의 소프트웨어 저작솔루션 및 단말용 플랫폼과 서버용 플랫폼(이하 '솔루션') 등을 연구·개발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합니다.
  1. 저작솔루션 제품 : 스마트메이커 빌더(SmartMaker / Builder)
  2. 단말용 플랫폼 : 스마트메이커 런처(SmartMaker / Launcher)
  3. 서버용 플랫폼 : 스마트메이커 서버(SmartMaker / Server)
- ② 회사가 제공하는 전항의 '솔루션' 제품은, 스마트메이커의 서비스 사이트 ([www.SmartMaker.com](http://www.SmartMaker.com))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품을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동영상 등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고, 앱 프로그램이나 디지털 북 등과 같은 스마트콘텐츠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동시다수의 사용자집단을 지원하는 서버용 플랫폼은,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클라우드 방식 서버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순수하게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하고, 하드웨어·네트워크·WAS·DBMS 등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준비나 사용료는 가입자의 부담입니다.

### 제11조 (라이선스 제공 방향)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솔루션' 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동안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서 신기술을 창안해내고, 산출해낸 전형적인 지적자산으로, 라이선스 제공 방식은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 ② 그러나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SW는 스스로 만들어서 쓰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소프트웨어 신문화 캠페인(이하 '캠페인')의 일환으로, 비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사용자에게는, 무상 다운로드 서비스와 함께,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상 라이선스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제12조 (라이선스 구매)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솔루션' 제품을, 일반기업·공공기관·각급 학교 및 단체 등의 조직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그 조직 산하의 구성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솔루션' 제품 라이선스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오프라인 방식공급은 물론, 해당 솔루션 및 플랫폼 제품 내부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한 구매 경로 및 방법과 상관없이, '솔루션' 제품 구매 및 사용자는 이 약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13조 (사용자 교육 및 지원)

- ① 회사는, '솔루션' 제품의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자지침서(매뉴얼) 및 관련 기술문서, 동영상 및 이러닝 교재, 다양한 사용자교육훈련 서비스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지원합니다.
- ② 회사는, 사용자들이 '솔루션'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지식 및 기술 문제를 해소해주는 모든 고객지원업무를 온라인서비스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솔루션' 제품 및 기술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기술 및 노하우가 필요로 하는 사용자를 위하여, 유료 회원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특정 어플리케이션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자신만

의 고유한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지식·기술·경험·노하우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고객과 개별 계약을 통한 컨설팅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제14조 (콘텐츠 호환성 지원)

- ① 회사가 제공한 '솔루션'을 활용해서 만든 스마트콘텐츠 제품은 가능한 다양한 운영체제와 단말기 환경에 배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하나의 제품으로 서로 다른 운영환경과 장치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는 호환성을 지원하도록 노력합니다.
- ② 그러나 일부 운영체제와 단말기에서는, 그 고유한 기술적인 구조와 기능적 한계 때문에, 하나의 스마트콘텐츠 제품이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일부 기능은 제한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보급률이 높지 않거나, 산업표준으로 정착하지 못한 운영체제 및 단말기 기종은, 서비스 자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5조 (콘텐츠 패키징 및 배포)

- ① 회사가 제공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만든 스마트콘텐츠들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스마트메이커.마켓에 등록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② '솔루션'을 기반으로 만든 콘텐츠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메이커.마켓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정상 작동을 하지 않거나, 제3의 오픈마켓이나 사이트에 배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솔루션'을 기반으로 만들고, 지정된 마켓에 등록된 콘텐츠 제품이라도, 일부 플랫폼 벤더사 및 오픈마켓 운영사의 내부 기술정책이나 앱스토어 운영지침에 따라서,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제16조 (운영관리 및 광고 메시지)

- ① 회사가 제공한 '솔루션' 제품을, 무상이던 유상이던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사용자나, 이 서비스의 사용자로 가입한 회원은, 회사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수신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회사는 회원에게 '솔루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관리 정보 및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회사가 제공한 '콘텐츠 매체광고 운영기준'에 따라 '솔루션' 및 스마트콘텐츠 사용자에게 광고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업그레이드 지원)

- ① 회사는, '솔루션' 제품의 실행환경인 운영체제,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 기술적 인프라 변화에 대응하는 작업을 수행한 제품을 만들거나, '솔루션' 운영 중에 발견된 오류 및 기능을 보완한 제품을 만든 경우에, 무상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 ② 회사는 사용자가 '솔루션' 제품을 정상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8조 (신제품 및 업버전)

- ① 회사의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새로운 적용대상이나 확장된 기능 및 개선된 기술을 담고 있는 '솔루션'의 신제품이나 업버전 제품을 개발 및 공급하는 경우에는, 유상 업버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에 해당 '솔루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 업버전 할 경우, 특별히 우대 가격을 적용하여 업버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 (서비스의 종료)

-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솔루션' 및 콘텐츠 제품의 라이선스 기간이나 사용 약정기간이 종료된 제품에 대한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솔루션' 및 콘텐츠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요금이나 서비스요금을 2개월이상 체납할 경우에, 업그레이드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해당 '솔루션' 및 콘텐츠의 실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제20조 (참여제도와 보상)**

- ① 회사는, 이 회사의 핵심역량인 'SW공학자동화 기술'을 담고 있는 '솔루션'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널리 보급해서, 누구나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스스로 만들어 생활과 생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SW 신문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② 따라서 친구추천 및 보상제도, 스마트콘텐츠(앱 프로그램, 디지털 북 등) 생산 및 보상제도, 홍보·마케팅 활동 포인트 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회원참여 및 보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제21조 (지적재산권 보호)**

-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저작솔루션, 단말용플랫폼, 서버용플랫폼 등 '솔루션' 제품 및 동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② 회사가 제공한 '솔루션' 제품 및 서비스와 동 기술관련 자료를 변조·개작·재구성 등 행위나, 제3자에게 무단 복제 및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이 약관에서 규정한 저작권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직간접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3장 스마트메이커 사이트 및 오픈마켓 운영**

**제22조 (스마트메이커.마켓)**

- ① 회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서,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콘텐츠를 생산·판매·활용하게 해주는 열린 콘텐츠 장터인 메이커스토어와 스마트메이커.마켓 (이하 '오픈마켓'이라고 칭함)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 ② 메이커스토어는 스마트콘텐츠의 제작에 소요되는 디자인 요소, 캐릭터, 사진, 이미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음향, 음원, 아바타, 설계자료, 처리규칙, 템플릿, 서적 등과 같은 요소들을 등록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 ③ 스마트메이커.마켓에서는, 회사가 제공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만든 앱 프로그램, 디지털북, 스마트툰 등과 같은 다양한 스마트콘텐츠는 물론, 제3의 도구나 기술로 만들어진 디지털콘텐츠도 등록 및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3조 (콘텐츠 제공자)**

- 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어 일반 대중(이하 '사용자'라고 함)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자(이하 '제공자'라고 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자' 역할을 수행할 회원은, 해당 활동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긴급 연락처, 판매방식 및 이익금지급계좌 정보) 등 회사가 지정한 부가정보를 등록하고, 콘텐츠제공자로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제24조 (콘텐츠 생산 및 등재)**

- ① '제공자'는, 자신의 전문분야 지식과 경험, 관심사항, 취미·특기, 아이디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사회적(직장)활동에 도움을 주거나, 교육훈련을 지원해주거나, 휴식과 오락·즐거움 등을 줄 수 있는 스마트콘텐츠 제품을 만들어, 오픈마켓에 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등재 신청할 스마트콘텐츠는 제공자의 선택에 따라서, 공개 또는 비공개 하거

나, 무상제공 또는 유상판매 할 수 있고, 유상판매의 경우 공급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제공자가, 스마트콘텐츠 제품을 오픈마켓에 등재 신청하는 것은, 해당 제품을 일반대중을 상대로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사용자들이 해당 제품 사용 중에, 실제로 발생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25조 (콘텐츠 등록 및 관리)

- ① '제공자'가 스마트콘텐츠 등재신청을 하면, 회사는 내규에 따라 해당 콘텐츠 제품의 용도·품질·성능·사용성·완성도·법적제약 등을 검토하여,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될 경우에, 즉시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공급을 개시하게 됩니다.
- ② 그러나 회사는 등재 신청한 콘텐츠가, 전항에서 규정한 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반송하여, 보완한 후에 다시 등재 신청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등재 신청한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회사의 사업방향이나 오픈마켓의 운영정책과 배치된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26조 (콘텐츠 검색 및 진열)

- ① 회사는, 스마트콘텐츠를 분류 및 전시하는 고유한 체계와 기준에 따라, 등록된 콘텐츠 및 상품을 분류하고, 순위를 결정하며, 쇼케이스 및 검색창에 진열합니다.
- ② 회사가, 특정 콘텐츠 제품에 대하여 광고신탁 또는 우선표시신탁을 받는 경우는, 쇼케이스 및 검색창에서 해당 콘텐츠 및 상품을 광고하거나 우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③ '제공자'가 등재신청을 할 때, 공개를 선택하고 유상 또는 무상 판매를 지정한 콘텐츠는, 회사가 주관해서 제3의 오픈마켓이나 웹사이트 및 협력기관에 일괄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콘텐츠를 판매 및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제27조 (콘텐츠 유료판매)

- ① 유상판매 콘텐츠 및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는, 그 대금을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과 같은 지급수단이나, 오픈마켓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머니(캐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 ② 유료판매 콘텐츠 및 상품의 수익금액은, 구매자가 결제한 매출액에서 결제수수료, 판매수수료(마진)와 부가가치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를 콘텐츠 제품 제공자별로 집계하고, 결제수단에 따라 캐시 및 포인트로 구분하여 순수익액을 기장 및 관리합니다.
- ③ 전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콘텐츠의 제공자별로 매월단위로 집계된 순수익액의 70%는 해당 콘텐츠의 '제공자'에게 배당합니다.

### 제28조 (콘텐츠 광고판매)

- ① '제공자'의 자신이 선택에 따라 콘텐츠 제품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공자'가 공급조건을 무료제공으로 선택한 스마트콘텐츠 제품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스마트콘텐츠 제품을 매체로 사용한 광고의 수익금액을 결제수수료, 판매수수료(마진)와 부가가치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를 콘텐츠 제품의 제공자별로 집계하여, 순수익액을 기장 및 관리합니다.
- ③ 전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콘텐츠의 제공자별로 매월단위로 집계된 순수익액의 50%는 해당 콘텐츠의 '제공자'에게 배당합니다.

### 제29조 (판촉 및 행사 참여)

- ① 회사는, 스마트콘텐츠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고, 앞으로 크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SW 생태계와 오픈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광고 및 홍보활동과 마케팅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광고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전개할 경우, '제공자'가 유상판매하는 스마트콘텐츠 및 상품에 대한 할인행사나 무료제공 행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콘텐츠의 '제공자'는, 자신의 콘텐츠 및 상품에 대한 시장선점과 신규 고객확보 및 광고·홍보 등을 위하여 참여하기로 합니다

**제30조 (월결산 및 수익 배당)**

- ① 회사는,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서,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여, 스마트콘텐츠 '제공자'별로 월 단위 매출액, 제경비, 순수익액, 배당금 등을 집계 및 정산한 월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자'에게 배당할 수익 금액은, 익월 25일에 일괄 지급처리 한다.
- ③ 상기한 배당금액 중에서, 캐시매출에 따른 순수익 배당금이, 1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만원단위로 정산하여 등록된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 처리하고, 포인트매출에 따른 순수익 배당금은 해당 '제공자'의 오픈마켓 계정에 포인트로 적립해드립니다.

**제31조 (콘텐츠 등록제도)**

- ① 회사가 제공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만든 스마트콘텐츠는, 회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등록된 경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오픈마켓에 등록된 스마트콘텐츠 제품이라도, '제공자'가 회원에서 탈퇴하거나, 2년이상 콘텐츠 제공자로서 활동이나 역할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의 전시 및 판매를 중단하거나, 해당 '제공자'에 대한 매출인식 및 수익분배 등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사용자 지원의무)**

- ① 스마트콘텐츠 '제공자'는 자신이 등록한 제품의 기능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꾸준히 개선하고 발전시켜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② 스마트콘텐츠 '제공자'는 자신이 공급한 제품의 사용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제33조 (제3자 지적재산권 침해)** ① 스마트콘텐츠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관련 자료 등을 통해서,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② 스마트콘텐츠 '제공자'가, 회사의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한 콘텐츠 및 상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회사는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장 청약철회, 계약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34조 (청약의 철회)**

- ① 회사와 유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구매일로부터 5일 이내(라이선스 등록 이전)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품목이 서비스 사용권임으로, 구매 후에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2. 회원이 사용권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한 경우
  - 3.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료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5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전자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제35조(청약 철회 등의 효과)

- ①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의 유료서비스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유료서비스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 ② 이 경우 회사가 14영업일 이후에도 타당한 사유없이 회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회원이 신용카드나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불하고 이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회원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으로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6조 (회원의 해제 및 해지)

-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이하 '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원탈퇴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이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회원의 신청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 ② 회원이 회원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 및 서비스 내 회원탈퇴 절차를 통하여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 (회사의 해제 및 해지)

- ①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원에 대한 사전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현행법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구두,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 ③ 제1항 단서의 경우, 회원은 유료서비스 사용권한을 상실하고 이로 인한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제38조 (회원에게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회원의 의무위반 사유는 제53조에 따라 개별 사용권의 운영정책에서 정하기로 합니다.
  1. 사용권 일부 권한제한 : 일정기간 사용권 일부 기능의 권한을 제한
  2. 사용권 이용제한 :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회원 사용권의 이용을 제한
  3. 계정 이용제한 :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회원 계정의 이용을 제한
  4. 회원 이용제한 :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 ② 회사의 이용제한이 정당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제한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 제39조 (잠정조치로서의 이용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정이 해킹 또는 도용 당하였다는 정당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 2. 불법 사용권 사용자 등 위법행위자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계정의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조사가 완료된 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여, 이용하는 회원에게 정지된 기간만큼 회원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제1항에 의한 위법 행위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0조 (이용제한의 사유와 절차)**

- ① 회사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횟수, 결과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용제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를 운영정책으로 정합니다.
- ② 회사가 제51조에서 정한 이용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나 구두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거나 사용권 초기 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 1. 이용제한 사유
  - 2. 이용제한 유형 및 기간
  - 3.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제41조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① 회원이 회사의 이용제한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의 이용제한에 불복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회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원의 불복 이유에 대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14일 이내에 답변이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 ③ 회사는 위 답변 내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5장 손해배상 및 환불 등**

**제42조 (손해배상)**

- ①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3조 (환불)**

- ① 회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캐시의 환불을 요청하면 50%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시에는 캐시 잔액에서 당초에 제공한 충전장려금, 은행이체 및 결제대행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공제 후에 남은 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작거나,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 ② 계속적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구매한 가액에서 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부분에 해당한 금액(각 상품별 사용금액 산정기준은 상품 구매 시에 고지함)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10%이내 금액 또는 남은 금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 ③ 현행법령 및 중대한 약관 위반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44조 (회사의 면책)

- ①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이용장애 및 계약해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서버호스팅 사업자가 통신 및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⑤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⑥ 회사는 회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콘텐츠(앱 프로그램, 디지털북, 웹콘텐츠 등) 서비스 내 또는 웹 사이트상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⑦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⑧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⑨ 본 서비스 중 일부의 서비스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회사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⑩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기대하는 등의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⑪ 회사는 회원의 사이버 자산(사이버 머니), 포인트, 등급 등의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⑫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미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⑬ 회사는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 또는 회원에 따라 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사항 및 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제45조 (회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 ①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권 초기화면이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통보합니다.
- ③ 회사와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제3의 분쟁조정기관이 조정할 경우 회사는 이용제한 등 회원에게 조치한 사항을 성실히 증명하고, 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46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전자메모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3일이상 회사의 운영하는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제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47조 (재판권 및 준거법)**

본 약관은 '회사'과 회원(사용자 포함)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 부 칙

본 약관은 2019. 12. 1. 부터 적용합니다.